



## 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

-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동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**부처나 지자체**는 우리 처(식품표시광고정책과)에 **2023.4.1.까지 회신**하여 주시기 바라며,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.
- 아울러, 동 개정(안)은 관보('24.3.21)와 우리 처 홈페이지(<http://www.mfds.go.kr> > 법령/자료 > 입법예고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: 1.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 
 2.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.  
 3. 검토의견서(양식)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관계부처, 지자체 및 관련 협회

주무관	정현정	사무관	이지영	식품표시광고 전결 2024. 3. 21.
				정책과장 김철희

협조자

시행 식품표시광고정책과-4210 (2024. 3. 21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/ [www.mfds.go.kr](http://www.mfds.go.kr)

전화번호 043-719-2183 팩스번호 043-719 / [silverxjung@korea.kr](mailto:silverxjung@korea.kr) / 비공개(5)